## 메는 사용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.X) 민법및민사특별법 6회

채희대 교수

(02/16)

- 1. 가능기에 대해서는 가능기된 청구권의 기초인 법률관계가 존재 한다는 추정력이 인정 된다. ( )
- 2. 이전등기의 현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, 전등기명의인에 대해서까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. ( )
- 3. 채무자 甲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1번 저당권,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丙이 토지소유권을 甲으로부터 양도받으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 (
- 4. 점유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. ( )
- 5. 점유보조자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므로 점유보호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. (
- 6. 소유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. ( )
- 7. 간접점유의 방식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있다. ( )
- 8.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없다. ( )
- 9. 공유부동산은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부동산 전부를 자주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. ( )
- 10.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. ( )
- 11.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. ( )
- 12.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. ( )
- 13.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. ( )
- 14.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(過失) 없이 과실(果實)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(果 實)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 ( )
- 15. 선의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더라도 현존이익의 배상을 하면 된다. ( )

## 메는 사용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.X) 민법및민사특별법 6회

채희대 교수

(02/16)

- 16. 악의의 점유자도 필요비상환청구권을 가진다. ( )
- 17.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일체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. ( )
- 18.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,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( )

## 매일정리노트(O, X) 정답

- 1. (X)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
- 2. (X)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소유자에게도 인정된다
- 3. (X) 후순위자가 없으므로 소멸한다
- 4. (X)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
- 5. (X)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보호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없다
- 6. (X)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므로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
- 7. (0)
- 8. (X) 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으며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
- 9. (X) 다른 공유자의 지분범위에서는 타주점유이다
- 10. (X) 상당부분을 점유한 경우는 타주점유이고, 착오로 일부를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이다
- 11. (X) 외형적, 객관적으로 결정한다
- 12. (X)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
- 13. (O)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
- 14. (X) 악의의 점유자라도 과실(過失)이 없는 경우에는 대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며, 과실 (過失)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대가보상책임이 인정된다
- 15. (X) 선의,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의 배상이며 선의라도 타주점유자는 손해전부를 배상 해야 한다
- 16. (O)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된다
- 17. (X)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며 특별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
- 18. (X) 선택권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에게 있다